

민방위기본법(시행령 포함)

문 10. 민방위기본법령상 국가의 재정상 지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그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때에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민방위사태의 예방과 신속한 수습 및 복구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및 급수시설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때에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국가는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민방위 물자 및 장비의 보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문 11.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읍·면·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표나 그 밖에 민방위 대원 편성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직권으로 민방위대를 편성한다.
- ② 직장 민방위대를 편성한 직장 민방위 대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장 민방위 대원 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 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경찰대학의 신입생으로서 재학 중인 남성(23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산업대학의 재학생으로서 입학한 날부터 6년이 지나 지역 민방위대 조직 제외 사유가 소멸한 남성(31세)은 그 사실을 거주지의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 12. 민방위기본법령상 협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방위사태에서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응급조치가 필요한 민방위사태가 발생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민방위대 동원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우정청장은 그 소재지 관할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민방위대의 동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공단체등의 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행정기관의 장이나 공공단체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 13.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응급복구에 필요한 물자·시설 및 장비를 비축하거나 설치·정비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준비에 따른 시설·장비 또는 물자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보고결과를 검토하여 시설·장비 등의 정비 또는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상대피시설의 안내와 유도를 위한 빨간색 바탕의 안내표지판과 흰색 바탕의 유도표지판을 해당 비상대피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의 점유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다.

문 16.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급박한 사정하의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 제거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 조치권자는 미리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고 주민 2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한다.
- ② 등화 및 음향의 금지 명령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는 그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응급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응급조치권자는 그 대상·지역·기간·방법·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방송, 신문 게재 또는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다.
- ④ 등화관제는 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 사이에 실시되되, 용광로화염은 공습관제뿐만 아니라 경계관제를 실시할 때에도 은폐 또는 소광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화염류는 은폐 또는 소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문 17.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 경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신속한 민방위 경보 발령과 전파를 위하여 민방위 경보 통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ㄴ.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7개 이상의 영화상영관이 하나의 건축물에 모여 있는 영리목적의 상설 영화상영관의 관리주체는 방송 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
- ㄷ. 접경지역의 읍장·면장·동장은 해당 읍·면·동에서만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민방위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 ㄹ. 민방위 경보는 민방공 경보와 재난 경보로 구분하며, 민방위 경보의 신호 방법과 전달 요령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① ㄱ, ㄹ
- ②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문 18. 민방위기본법령상 지휘·감독·검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지역연합 민방위대장이 읍·면·동장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② 직장연합 민방위대를 구성한 경우에 민방위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민방위를 위한 민방위대의 활동에 관하여는 직장연합 민방위대장이 시·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속 민방위 대장을 지휘한다.
- ③ 민방위대의 운용에 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지휘·감독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를 지휘·감독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현황,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특별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군법(시행령 포함)

문 19. 예비군법령상 예비군 동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국방부장관은 예비군대원이 출어(出漁) 중인 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원명령 발령 후 72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서 소집에 응하도록 동원을 명령할 수 있다.
- ㄴ. 국방부장관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민방위 대장으로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원을 보류할 수 있다.
- ㄷ. 질병 등의 사유로 동원을 연기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고용주가 소속 예비군중대장에게 동원명령을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동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ㄹ. 동원연기의 신청을 받은 예비군중대장은 동원명령을 발령한 수임군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